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

## 1. 투표참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 투표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태어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나. 투표일시

○ 선거일 :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지자체(보건소)에서 받은 외출허용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준 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기간 : 3월 4일 ~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분은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3월 5일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지자체(보건소)에서 받은 외출허용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준 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 다. 투표장소

투표장소는 이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된 일반 투표안내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사시는 곳(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라. 투표하러 갈 때 가지고 가야할 것 :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하나를 꼭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 신분증 촬영 사진, 모바일 신분증 캡처 화면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선거일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 (1)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 (2)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투표보조용구를 받습니다. 재·보궐선거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 (3)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한 명을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합니다.
- (4) 투표지를 투표보조용구에서 분리하여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은 후 기표소에서 나옵니다.
- (5) 접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보조용구를 반납한 후 투표소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 시각장애로 인해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1~2명이나 본인이 지명하는 2명에게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3. 사전투표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 (1)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등록된 주소지에 따라 관내 또는 관외선거인으로 구분하여 투표가 실시되니, 안내하는 사람의 안내에 따라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2)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 (3)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투표보조용구를 받습니다. 재·보궐선거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 주소지가 아닌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본인 주소지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투표보조용구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습니다.

(4)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한 명을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합니다.

(5) 투표지를 투표보조용구에서 분리하여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은 후 기표소를 나옵니다.

※ 주소지가 아닌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기표소를 나옵니다.

(5) 접은 투표지 또는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보조용구를 반납한 후 투표소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 시각장애로 인해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1~2명이나 본인이 지명하는 2명에게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4. 투표보조용구 사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투표보조용구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명·성명이 점자로 인쇄되어 있고, 후보자 성명 오른쪽에는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도록 기표홈이 뚫려 있습니다.

(2) 선택한 후보자 오른쪽의 기표홈에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됩니다.

※ 기표소에 비치한 기표용구 외에 개인 도장 등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 5. 거소(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 투표할 수 있는 사람** :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나. 투표일시** :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후 즉시

**다. 투표장소** : 집 또는 사무실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

### **라. 거소투표 방법**

(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겹봉투 안에 회송용봉투와 투표용지가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할 때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신청하신 경우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2) 투표용지에 후보자 한 명을 선택하여 볼펜, 사인펜 등으로 ○표합니다.

(3) 기표한 투표지를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에서 분리하여 회송용봉투에 넣고 폴 또는 양면테이프로 봉합합니다.

(4) 회송용봉투를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서 우편(무료)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마. 참고사항**

(1) 회송용봉투가 “3월 9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지 않으면 기권이 되므로 지체없이 기표해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9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용지에 선거인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거나 개인 도장을 찍는 때에는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